

#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429-1
----------	-------

2024. 4. 22.

복지환경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법률 인용을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점용료 등의 징수(안 제9조)

(개정안)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“점용료 등”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

(수정안) 시장은 법 제38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“점용료 등”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안 제9조 중 “법 제23조제1항 각 호”를 “법 제38조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점용료 등의 징수) 시장은 <u>법 제23조제1항 각 호</u> 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 하 “점용료 등” 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	제9조(점용료 등의 징수) ----- <u>법 제38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